

제 호

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서

-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명칭:
-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대표자:
-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: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